

(붙임)

##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위원(제2기) 후보자 등록안내서

- 「건축물관리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 공개 선정시 후보자 명부 작성에 활용코자 하오니
- “첨부1”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께서는 “첨부2”를 참고하여 “첨부3” 및 “첨부4”의 서식에 의한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개인 정보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2023년 2월 17일(금)**까지 아래 E-mail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mail : [duql0306@kalis.or.kr](mailto:duql0306@kalis.or.kr)**
- 자격요건, 등록자료 양식, 등록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은 첨부 1, 2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 기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시설본부 건축시설관리실(이은엽 직원, 055-771-4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여 주신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는 개인정보 및 정보 공개 관계 법률을 적용하여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 참고로, 평가위원회는 일정에 따라 본사(진주시) 또는 각 지역본부(고양시, 춘천시, 청주시, 김천시,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 추후 일정
  - ‘23. 01. 30. ~ ‘23. 02. 17. :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신청 접수(E-mail)
  - ‘23. 02. 18. ~ ‘23. 03. 26. : 평가위원 심의 및 선정
  - ‘23. 03. 27. ~ ‘23. 03. 31. : 평가위원 위촉장 발송
- 첨부 1.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 2. 등록자료 작성 및 제출
  - 3.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끝.
  -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끝.

<첨부1>

##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 평가위원회 위원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함.
  1. 건축물관리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대학에서 건축물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건축물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4. 그 밖에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함.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건설관련법령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임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첨부2>

## 등록자료 작성 및 제출

### 자료 작성

- **평가항목** : 본인의 전공학과, 세부전공과목, 현직의 담당업무를 종합하여 아래 표에 따라 1, 2, 3순위로 작성해주십시오

평가항목			
• 법규유지,	• 기능유지/에너지 및 친환경,	• 구조안전,	• 화재안전

(예시)

평가항목	① 법규유지	② 구조안전	③ 화재안전
------	--------	--------	--------

- **성명, 생년월일,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 FAX, e-mail, 자료수령지, 직업군** : 해당 내용을 빠짐 없이 작성·표시해 주십시오(단,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는 선택항목임)
- **학력** : 최근 날짜순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대학 이상의 학력만 기재하시고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하고 졸업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졸자로서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고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학위취득년월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학력	2005. 8	한국대학교	박사	수료	구조공학과
	2000. 2	대한대학교	석사	졸업	건축학과
	1996. 2	대한대학교	학사	졸업	건축공학과

### ○ 경력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경력을 최근 날짜순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점검·진단 관련 자문·심의위원회 활동 경력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 국가 기술자격

해당자에 한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등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에 따라 해당 기술등급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자격요건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건축물관리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② 대학에서 건축물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 분야의 특급 기술인 이상으로서 건축물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④ 그 밖에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자료 제출**

1.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표 내용은 절대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주시기 바랍니다.
2.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2023. 02. 24(금) 까지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uql0306@kalis.or.kr](mailto:duql0306@kalis.or.kr)
2. 보내주신 등록신청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에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 기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시설본부 건축시설관리실(이은엽 직원 : 055-771-4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3>

##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늘색 음영부분은 해당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가수	2기	세부분야	①	(미선택)	②	(미선택)	③	(미선택)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직장명				직위	휴대폰			
직장주소	(우 )				직장전화			
					FAX			
					E-mail			
주택주소 (선택항목)	(우 )				주택전화 (선택항목)			
자료수령지	(미선택)	(주소 )						
학력현황	학위선택	년도	월	출신학교	출신학과	전공분야	졸업구분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자격현황	자격구분	취득년월		자격종목		등록번호	인가관리기관	
		년도	월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경 력	시작년월		종료년월		근무처	직위(급)	주요업무	
	년도	월	년도	월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미선택)					
기술등급	(미선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자격요건	(미선택)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국토안전관리위원회 활동사항 (있을 경우)	위원회명			관련부서		임기(시작-종료)		참여분야
타 위원회 활동사항 (있을 경우)	위원회명			운영기관		임기(시작-종료)		참여분야

<첨부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국토안전관리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관리법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후보자 신청 등록접수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구 분	개인정보 처리항목
필수항목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휴대폰, 직장전화, 메일 주소, 팩스번호), 학·경력·기술자격 사항
선택항목	자택주소, 자택전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국토안전관리원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평가위원회 구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50조제3항 및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의한 심의

국토안전관리원은 수집 목적에 해당되는 사안 발생시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하여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동의 확인 후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것에 한하여 활용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후보자 등록신청 시점부터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후 임기종료시까지 보존하며 임기종료 후 파기합니다.

※ 학·경력·기술자격 사항은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시 처리하고 위촉 이후 즉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자 확인 : 성명 \_\_\_\_\_ (인 또는 서명)